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90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감면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2조의6(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이자 감면을 요청한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을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자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바,²⁾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으나,³⁾ 대출금의 이자 감면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이하 생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이하 생략)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재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지원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 9. (생략)

④ ~ ⑦ (생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2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⁴⁾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를 감면할 수 있게 되면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해당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⁵⁾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체채무에 대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⁶⁾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5)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산불 피해 가게·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3.24.

6)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수해 피해 가게·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25.7.18.

우선, 현행법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⁷⁾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의 실효성 및 중복 입법 소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금리 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바, 소상공인 보호·육성 관련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⁸⁾가 정책자금 대출금리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연속성 측면에서 심의회 구성 방식 및 전문성 유무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 (생략)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이하 생략)

8)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 지원 취지에 공감하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지원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